



##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1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교육기간 연장 및 교육이수 독려 요청

1. 관련 :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허가자등의 교육의무)
2. 축산업허가를 받은 자와 가축사육업등록을 한자는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강하여야 합니다.(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는 2년에 1회)
3. 코로나19 및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관련종사자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온라인교육과 서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고령의 축산농가가 많아 교육 미이수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21년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22.1.31까지 교육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니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고령축산농가를 위해 서면교육도 병행 실시 중)
5. 이번 연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미이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을 공지하여 주시고,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시스템도 함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6. 교육총괄기관에서는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연장을 안내하고, 온라인교육이 어려운 고령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서면교육 참여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1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이수자 현황( 시도별 집계 ). 1부.  
2.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간연장 안내(질의응답). 1부.  
3. '21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이수자 명부 1부.(비번 12345, 별도송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시도 축산부서, 농협경제지주(축산컨설팅부)



사무관 **민동명** 축산정책과장 <sup>2022. 1. 6.</sup> **이정삼**

협조자

시행 축산정책과-70 (2022. 1. 6.)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329 팩스번호 044-868-0461 / [dmmin@korea.kr](mailto:dmmin@korea.kr) / 비공개(6)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